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9
----------	------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의자 : 홍문표 · 황주홍 · 이명수
박덕흠 · 이개호 · 안상수
김종회 · 김태흠 · 권석창
김현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축산농가가 증가하여 축산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호소(湖沼)나 토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저수지·담수호의 수질오염을 방지·복원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의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고 있는바, 농지관리기금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기금수혜자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채권과 상환약정일이 6개월 이상 된 불건전채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부

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이 불건전채권 등으로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과세정보 등을 알 수 없어 채권회수가 곤란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 등을 요청하고 열람 또는 조회·검색·복사할 수 있는 자료에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시키되,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최근 입법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정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 등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가.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7. 농어촌의 환경보전 · 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1) 수질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시설

(3) 오수 · 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생태계 보전 · 복원사업

제10조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0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 나. 어항에 관한 조사·설계 등 어항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다.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라.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 마.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幼魚基盤) 정비사업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0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과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기관의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금액의 증명와 국세의 납세 또는 체납 등 관련 과세정보: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관서의 장
 2. 지방세 납세 또는 체납 등 관련 과세정보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농지와 농업경영체 관련 등록 등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고용보험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장관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6. 과산·면책·개인회생 정보와 금융 관련 부채 등 관련 자료: 은행연합회의 장
 7. 토지·건물과 법인 등 등기 관련 자료: 법원행정처장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소,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보 요구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사용 범위
 4. 구체적 요구 내용

⑤ 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한 농업인 등이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에 필요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u>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u> <u>「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u>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u>	제10조(사업) ① ----- -----. 1. ~ 5. (현행과 같음) <u>6. 다음 각 목 등의 농어촌지역 개발사업</u> 가. <u>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u> 나. <u>「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u> 다.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u>
<u>7.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u> <u>· 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u>	<u>7. 농어촌의 환경보전·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u> 가. <u>다음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u> (1) <u>수질오염방지시설</u> (2) <u>하수도시설</u> (3) <u>오수·폐수처리시설</u> (4) <u>가축분뇨처리시설</u> 나. <u>생태계 보전·복원사업</u>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p>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p> <p>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p> <p>나. ~ 마. (생략)</p> <p>12. (생략)</p> <p><신설></p>	<p>11. -----</p> <p>-----</p> <p>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p> <p>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p> <p>나. 어항에 관한 조사·설계 등 어항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한 사업</p> <p>다.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p> <p>라.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p> <p>마.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幼魚基盤) 정비 사업</p> <p>14.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p> <p>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0조의</p>
---	--

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과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금액의 증명와 국세의 납세 또는 체납 등 관련 과세 정보: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관서의 장

2. 지방세 납세 또는 체납 등 관련 과세정보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농지와 농업경영체 관련 등록 등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고용보험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장관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6. 파산·면책·개인회생 정보와 금융 관련 부채 등 관련 자료: 은행연합회의 장

7. 토지·건물과 법인 등 등기 관련 자료: 법원행정처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

소,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보 요구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사용 범위

4. 구체적 요구 내용

⑤ 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한 농업인 등이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에 필요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
를 요구하는 경우